

주요국의 경쟁거버넌스 운영

본협회 조사부

미국

적극적 예양의 적용에 관한 미국·EU간 협정 체결

미국과 구주공동체의 대표자가 '98년 6월 4일 "적극적 예양"의 원칙에 따라 양자 상호간에 반경쟁적인 사건을 의뢰할 때에 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조인식에는 자넷 리노 사법장관 및 로버트 비도후스키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대표하고 칼 폰 밀트 구주위원회 경쟁정책 담당위원이 구주공동체를 대표하였다.

로버트 비도후스키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의 미국과 구주공동체와의 역사적 협정은 각국이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국제적 경쟁시장의 이익이 가장 좋은 형태로 달성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91년의 독점금지협력 협정에

따라 미국과 EC는 일방의 경쟁당국이 타 경쟁당국에 대하여 상대국의 경쟁법을 위반함으로써 이러한 거래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91년 협정이 발효된 이래 미국과 EC의 경쟁당국은 대서양의 양안에서 상대국에 영향을 주는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여왔다.

지난 해 사법성은 '91년 협정의 적극적 예양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정식심사를 요청하였다. 당해 사건은 EC에 의하여 심사중에 있는 항공산업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에 관한 사건이었다.

이 실험정은 한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뢰를 하는 사건의 형태를 명확히 하고 이들 사건을 처리할 때 경쟁당국이 해야 할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아래 두개의 경우 일방당사자(요청을 하는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적극적 예양에

근거하여 그 요청을 중시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의 관할지역에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자기의 심사활동을 연기 또는 중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외국의 반경쟁적 행위가 요청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예 : 한 국가에서 행해진 카르텔로 국가에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② 외국의 반경쟁적 행위가 요청국의 소비자를 부수적으로 해치고 있지만 당해 행위가 다른 일방의 당사자의 관할영역 내에 존재하고 주로 당해 영역을 향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②의 사례로서 이탈리아와 미국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이탈리아의 빠르마함 제조업자간의 생산수량할당 협정이 열거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탈리아의 경쟁당국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한 심사를 우선하게 하고 자기들의 심사를 중지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이 카르텔을 폐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비도후스키 위원장은 「이 협정은 우리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경쟁법의 집행에 대한 관심은 말할것도 없고 '91년 협정에 근거하여 그 경험을 반영하고 이 협정은 특정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노력의 배분을 가져오며 이에 따라 법집행 수단(Resource)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적 예방"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해서 경쟁법을 집행할 때에 일어나는 마찰이나 해외에서 증거의 입수 및 배제조치를 할 시기에 직면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고 위탁한 사건의 심사에 전력경주하며 사건의 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이 타당사국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고 또는 합리적인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미국과 EC는 특정의 상황에서 양국이 동시에 심사를 하는 것(Parallel investigation)이 정당화 되고 또한 어느 당사국도 그 심사활동을 개시 혹은 재개하는 권한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EC 쌍방의 합병심사 규정에 심사의 중지나 연기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정은 합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정보의 제공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비밀 정보를 교환하고 협정집행의 목적만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적극적 예방의 협정 체결에 대한 투표 결과 5대0으로 가결하였다.

■ '98. 6. 4. FTC 발표문

연방거래위원회, 인텔사의 연방 반트러스트법 위반에 의한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심판개시 결정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라 함)는 지난 6월 8일 세계 최대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자인 인텔사가 경쟁의 제한과 기술혁신의 저해를 목적으로 거래선 및 경쟁선과의 거래중지를 하였다고 하여 심판개시를 결정하였다.

FTC는 인텔사의 거래선 가운데 3사가 인텔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컴퓨터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인텔사 제품에 대하여 관련 특허를 제공해 주지 않는 데 대한 보복으로 대응책을 채택함으로써 위법하게 그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3사는 D.E.Co(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I.Co.(Intergraph corporation) 및 C.C.Co(Compaq Computer corporation)이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관한 중요한 특허와 그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사가 인텔사의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다른 컴퓨터 회사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하고자 할 때에 인텔사는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공급을 중지하겠다는 위협으로 보복하였다고 FTC는 주장하고 있다.

FTC 윌리엄 배어 경쟁국장은 「기술혁신은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며 특허는 기술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텔사의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위대한 공헌은 반도체 제품의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특허에 의하여 촉진되고 수호되어 왔다. 그러나 인텔사는 타사업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타사업자는 인텔사의 독점지배에 도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된다. 인텔사가 독점사업자로서 타사보다도 더 양질의, 보다 값싸고 보다 매력적인 제품을 생

산함으로써 경쟁이 가능하였다. 인텔사가 타사업자의 도전을 방해하여 그의 독점력을 확고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텔사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독점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텔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산타 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의 연간매상고는 약 208억불이다. 동사는 펜티엄, 펜티엄MMX, 펜티엄 프로 및 펜티엄 II의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져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많은 종류의 반도체 설계·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의 중추처리 유닛(Unit)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의 두뇌'로 흔히 표현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컴퓨터에 불가결한 부분으로써 타 기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건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FTC의 심판개시 결정서에도 인텔사는 범용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인텔사의 시장에서 우위성은 동사에 의한 국내시장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동 분석에서 인텔의 범용마이크로프로세서의 매상고는 전 세계의 약

80%까지 신장하고 있다.

인텔사는 적어도 3회, 경찰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또는 인텔사에 당해 권리의 공여를 거부한 사업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선택적이고 동시에 공격적인 방법으로 이의 상호이익 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케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FTC는 주장하고 있다. 이 보복은 주로 머지않아 발표되는 인텔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컴퓨터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겠다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행위에 의하여 거래선이 인텔사가 탐내는 특허의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줄 때까지 거래선에게 손해를 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표적이 된 회사의 판매 및 이익을 저해하고 사법의 개입이 없을 때에는 중대한 또는 장기적인 영향을 컴퓨터 업계에 미쳐왔음을 심판개시 결정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심판개시 결정서에 의하면 컴팩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금액 및 수량에서 인텔사의 최대의 거래선이며 '97년에는 인텔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약 20억불 어치를 구입하였다. 이와 같이 인텔을 탐제한 기기는 컴팩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FTC에 의하면 '94년 11월에 컴팩사는 인

텔사와는 별도의 컴퓨터시스템 제조업자인 파카트·벨·에레크트리크사(현재는 파카트 벨 NEC)의 마더보드에 컴팩사의 특허 기술이 사용하였다 하여 동사를 제소하였다. 마더보드는 중앙처리장치 및 기억장치를 포함하는 컴퓨터의 주요한 회로기판이다. 마더보드의 공급자인 인텔사는 파카트·벨을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파카트 벨 측에서 소송에 개입하였다. 마더보드에 대한 컴팩사의 지적소유권의 주장에 대항하여 인텔사는 컴팩사가 인텔사의 최신형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동일한 상황에 놓여진 컴퓨터 제조업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제공을 중지하였다. 인텔사는 컴팩사가 동 특허를 인텔사와 상호특허사용 계약(Cross-License)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후 겨우 이 기술정보에 컴팩사의 접근이 재개되었다고 FTC는 설명하였다.

심판관의 심리 후 FTC는 인텔사가 디지털사, 인터그래프사 및 컴팩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인텔사가 거래선에 대하여 자사의 지적소유권을 라이선스하든지 혹은 매각할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제품 또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차별적으로 중지하겠다고 협박)의 재

발을 방지하는 배제조치를 요구하였다.

FTC의 배제조치 명령(안)에 의하면 FTC는 인텔사에 대하여 동사 권리의 라이선스 또는 매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업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사 제품 및 기술에 대하여 거래선이 접근하는 내용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명령을 원하고 있다.

심판개시 결정서의 송부에 대한 위원회의 투표는 3대1로 가결되고 오손 스윈들 위원이 반대하였다. 스윈들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인텔사가 법률에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슬회하였다.

■ '98. 6. 8, FTC 발표문

비자사, 직불카드 관련 반트러스트 조사 대상에

연방 반트러스트 당국은 비자사가 소비자들이 경쟁회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물건 구매를 위해 비자사의 새로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 하여, 조사하고 있음을 산업계 관계자들이 밝혔다.

당해 조사는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가 자신들의 신용카드를 받은 업체들은 자사의 이름이 붙은 직불카드도 받아야 한다고 한 요건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확대 조사의 일부이다. 경쟁관계인 직불카드 네트워크에는 MAC, NYCE, Honor, Pulse 및 Star system 이 포함된다.

세계 최대의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사와 2위 업체인 마스터카드사는 이미 Sears Roebuck과 Safeway와 같은 대규모 소매업체로부터 본 사건과 유사한 직불카드 관련 위반으로 제소된 상태이다.

비자사의 새로운 직불카드는 "다른 어느 업체의 것보다도 수수료가 비싸다. 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독점상태인 신용카드와 이를 연계하는 것이다"라고, 비자사를 제소한 단체 중 하나인 국제 대형소매업협회 수석부사장인 Morrison Cain은 말하였다.

비자사의 대변인인 Kelly Presta는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당해 회사가 FTC 조사를 통지받았으며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도 받았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마스터카드사의 대변인인 Glynnis Woolridge도 "우리는 이번 FTC의 조사를 알고 있으며, 이에 협력하고 있

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비자사가 온라인 직불카드 사업에 진출한다고 한 5월 발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였다고 산업계 관계자들은 말하였다. 은행들은 동 회사로부터 만일 자사 카드를 선택할 경우 비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적 직불 네트워크 사업자들을 당해 카드 사용가능업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98. 7. 10, Los Angeles Times

미 FTC, 씨그렘사의 폴리그렘사 취득 이례적으로 신속히 인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씨그렘사가 106억달러로 폴리그렘사를 취득하게 되는 기업결합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인가하였다.

동 회사는 7월 9일 30일간의 반트러스트 검토기간 동안 FTC가 추가적인 정보 내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당해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씨그렘사는 아직 유럽위원회로부터의 반트러스트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폴리그렘사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의 FTC의 신속한 인가는 일부에서는 놀랄만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 위원회는 10년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폴리그램사와 워너 브러더스사와의 기업결합을 저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산업계 전문가들은 음반산업이 워너 브러더스/폴리그램 기업결합이 저지된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형 음반업체의 수는 6개이다. 당시 워너 브러더스/폴리그램 기업결합에 대한 FTC의 반대이유 중 하나는 그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시장의 26%가 기업결합된 업체에 돌아간다는 것이었는데, 씨그램/폴리그램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결합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5%가 된다. 이는 또한 주요 음반업체의 수를 6개에서 5개로 줄이게 된다. 게다가 당해 기업결합으로 음악산업 최대의 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FTC의 "Watch" 소식지는 당해 기업결합 심사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놓고 FTC와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이 다투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규제당국이 당해 기업결합을 엄격히 심사될 것이라는 예상이 증대하였었다.

FTC와 법무부는 또한 Time Warner/Turner Broadcasting System 기업결합의 검토를 놓고도 다툼 바 있었다.

"FTC가 워너 브러더스/폴리그

램 기업결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볼 때 나는 이번 결정을 듣고 매우 놀랐었다" 라고 Foley & Lardner 법률회사 소속의 반트러스트 전문가인 Robert Burka는 밝혔다.

■ '98. 7. 10, Los Angeles Times

GE, 의료기기 사업 부문의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화해

General Electric Co.(이하 「GE」라 함)와 미국 법무부는 동 회사의 의료기기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2년을 끌어 온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화해에 도달하였으며, 동 회사는 두 번째의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일부 컴퓨터 서비스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GE는 7월 14일, 컴퓨터 의료기기에 GE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들에게 부과한 규칙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법무부는 GE가 500개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기기 A/S 계약과 관련하여 GE와 경쟁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위법하게 경쟁을 제약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회사를 상대로 1996년 소를 제기하였었다.

이 화해의 성립과 동시에 법무부는 GE가 1,600만달러 규모의 InnoServ Technologies Inc.의 취득 계획에 대한 반트러스트 제소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회사는 의료촬영기기의 A/S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그 대가로 GE는 텍사스주 알링턴에 소재한 InnoServ사의 A/S 소프트웨어 자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GE는 CT 스캐너 및 자기공명촬영기기(MRI)와 같은 의료촬영기기의 최대 제조업체이다. 동 회사는 자사 및 다른 제조업체의 기기에 대한 A/S를 제공하며, 자체적으로 기기를 정비하는 병원들 및 소규모 A/S 전문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96년 제기된 소송에서는 GE가 자사의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하는 병원들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되었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해 이들 병원들은 다른 병원 내지 클리닉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A/S 시장에 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여야 했었다는 내용이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이번 화해는 병원에서의 소프트웨어 공급가격을 낮추며 의료기기 정비에 관한 경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GE는 성명을 통해 당해 화해가 유죄의 인정은 아니라고 하였다.

"당해 화해에서 GE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

였다. 법무부도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GE는 성명에서 언급하였다.

Klein 국장은 GE는 물론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동 회사가 이와 같이 제약적인 라이선싱 협정을 요구한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커넥티컷주 Fairfield에 소재한 GE는 지난 5월 InnoServ사와의 기업결합 협정에 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7월 14일 당해 화해의 일부로서 접수된 소장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독점을 형성할」 것이며, 이 결과 GE는 기기 A/S를 담당하는 경쟁업체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98. 7. 15, Los Angeles Times

**록히드 마틴사, 노스롭 그루먼사
취득 단념
- 미 법무부와의 화해교섭 결렬**

미국의 군수대기업인 록히드 마틴사는 7월 16일,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를 총액 83억 달러로 취득하려는 계획을 단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 취득이 실현되면 「거래규모가 국방부 예산의 25%가

될」 정도의 거대군수기업이 되기 때문에 중요기술의 1개사 독점을 싫어하는 미국 국방부와 법무부가 이의 저지에 나선 것이다. 록히드사는 당해 취득에 반대하는 미국 법무부 및 국방부와의 화해교섭이 결렬로 끝난 상황에서,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서 이를 다투더라도 취득 실현의 기대는 희박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대형 취득이 줄을 이었던 미국 방위산업의 재판은 전기를 맞았으며, 양 회사는 거대기업인 보잉사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기업을 포함한 새로운 M&A를 모색할 것인가, 또는 방위산업 이외로 활로를 찾을 것인가라는 경영전략의 재검토를 재촉받게 될 것이다.

록히드사의 번스 코프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같은 날, 「법무부와의 화해가 불가능한 가운데, 유일한 고객(국방부)과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 결단을 촉진하였다」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한편 법무부 측도 취득에 대하여 포기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4개월에 걸친 양 회사와 미국 정부의 논쟁은 법정투쟁 돌입을 목전에 두고 단숨에 정리되었다.

록히드사는 작년 7월에 그루먼사 취득을 발표하였으나, 미국 법무부는 새로운 회사가 공중경계관

제기(AWACS) 탑재 레이더 장치 등 「방위기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방위전자부문에서 40억달러 상당의 부문 분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 회사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법무부는 3월말에 당해 취득을 저지하기 위한 제소를 단행하였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당해 소송에서 법무부는 「취득 후의 새로운 회사는 항공기용 레이더 등 8개 분야에서 반트러스트법상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독점에 따른 비용증가는 미국 납세자의 불이익으로도 된다」라고 하였으며, 최후까지 이러한 주장을 유지하였다. 양 회사는 7월 16일까지 몇 개의 타협안을 제시하였지만, 법무부의 대응에는 변화가 없었다.

록히드사는 국방부가 조달하는 최신예전투기인 F22의 개발을 주도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 회사는 국방부가 위탁하고 있는 「전역 고도방위 미사일(THAAD)」의 발사시험에 5회 연속 실패하였다. 이 사태를 중대하다고 본 국방부는 지난 주 록히드사에 대하여 군수기업 레이스온 사로부터의 협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계약자를 교체하겠다고 통고하

였다.

한편 그루먼사의 크레이저 회장은 7월 16일의 회견에서 「단순한 방위기업으로는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여, 2002년까지 민간용 정보 기술을 축으로 120억달러(현재 약 100억달러)의 판매고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 '98. 7. 17&18, 일본경제신문

**미 FTC, 벤츠-크라이슬러
기업결합 인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크라이슬러사와 독일의 다이믈러 벤츠사간의 기업결합 계획을 인가하였다고 크라이슬러사 및 동 위원회가 7월 29일 발표하였다.

「반트러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업결합은 진행하여도 좋다. 이들은 반트러스트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라고 FTC 대변인인 Victoria Streitfeld는 언급하였다.

이번 인가는 유럽연합이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한 후 1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미국 및 유럽 양쪽의 반트러스트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크라이슬러사의 대변인인 Lori McTavish는 밝혔다.

결합된 회사가 사업을 벌일 몇몇 기타 국가에서는 규제당국의 인가 신청이 아직 계류중이거나

또는 미신청 상태라고 McTavish는 덧붙였다. 그러나 FTC와 유럽연합의 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 두 자동차 제조업체는 5월 7일 다이믈러 크라이슬러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식 총액은 약 360억달러로 평가된다.

「이번 인가는 두 회사 모두에 좋은 소식이다. FTC의 심사는 우리들 모두가 직면하였던 주요 규제장애 중 하나였다」라고 크라이슬러사의 회장인 Robert J. Eaton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업결합 과정의 다음 단계는 주주들에 대한 특별위임장 발송인데, 이는 8월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 회사의 주주들은 9월 18일 델러웨어주 Wilmington 및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회합을 갖고 당해 기업결합 계획에 대하여 투표한다.

다이믈러 벤츠사의 사장인 Juergen Schrempp는 지난주에 이번 기업결합이 11월 내지 12월에 완료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 '98. 7. 30, The New York Times



**유럽위원회, British Airways-
American Airlines간 제휴 인가**

유럽위원회는 7월 8일, British Airways-American Airlines간 제휴와 미국의 United Airlines, 독일의 Lufthansa 그리고 Scan-dinavian Airlines System간의 연계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이들 항공사들이 수백 회의 공항 이착륙구역 이용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British Airways 및 American Airlines는 유럽연합 경쟁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가 자신의 원래 입장을 누그러뜨린 데 안도감을 표명하였으며, 항공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신들의 제휴가 영국과 미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인가도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Lufthansa와 United Airlines간의 연계는 이미 미국의 인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들 항공사들은 유럽위원회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Van Miert는 British Airways와 American Airlines가 주 267회의 공항 이용권을 별도의 보상 없이 경쟁 항공사에 양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220회 내지 230회의 이용권은 런던 히드로 공항 이용권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게트워 공항 이용권이 될 것이다. Lufthansa와 United Airlines는 108 회의 이용권을 포기하여야 할 것

인데, 이는 주로 프랑크푸르트 공
항에서이다.

Van Miert는 또한 이들 항공사
들에 대하여 만일 경쟁업체들이
승객이 많은 노선에 취항하고자
한다면 이들 노선에 대한 취항편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
다. British Airways와 American
Airlines는 런던, 시카고, 마이애미
및 댈러스를 잇는 노선 취항을 제
한하여야 할 것이고, Lufthansa와
United Airlines는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하여 시카고 및 워싱턴 D.C.
로 향하는 노선의 취항을 제한하
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정
부는 이러한 제한에 반대하고 있
다.

동 위원회는 두 건의 항공사간
제휴 - 네덜란드의 KLM과 미국의
Northwest Airlines간의 제휴, 그리
고 미국의 Delta Air Lines, 벨기에
의 Sabena, Austrian Airlines 및
Swissair간의 제휴 - 에 대하여는
아직 심사중이다.

British Airways-American Airlines
간의 제휴는 1996년 6월에 처음으
로 공표되었는데, 미국 교통부와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인 Margaret
Beckett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이
들의 결정은 올 가을에 내려질 것
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Beckett 장
관은 7월 8일 자신은 이미 이 제
휴를 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

혔다.

당해 제휴가 무리없이 진행되려
면 영국과 미국간에 '영공 개방'
협정이 체결되어 한 국가의 항공
사가 정부의 인가 없이 다른 국가
의 어느 공항으로든 취항할 수 있
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Delta 및 영국의 Virgin Atlantic
과 같은 경쟁 항공사들은 British
Airways-American Airlines간의 제
휴에 반대하여 왔는데, 이들은 유
럽위원회가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Virgin Atlantic
은 관련 항공사들이 양도하여야
하는 공항 이용권이 「상당히 불충
분」하다고 하였다.

United Airlines-Lufthansa-SAS
간의 제휴는 이제 독일 규제당국
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 '98. 7. 9,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BSKyB사의 서비스 전송관행 조사

영국의 지배적인 유료 텔레비전
회사인 British Sky Broadcasting
사(이하 "BSkyB사"라 함)가 200
개 채널의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
스를 불평등한 조건으로 영국 유
선방송회사들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유럽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
고 있다.

BSkyB사는 Karel Van Miert가
담당위원인 EU 경쟁당국이 동 회
사가 주도하는 양방향 텔레비전
투자사업에 대하여 벌이고 있는
장기간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기에 자사의 영업전략에
대하여 새로이 검토를 받게 되었
다. 루퍼트 머독의 언론기업이
BSkyB사의 최대주주이다.

BSkyB사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3대 유선방송회사 - Telewest
Communications, NTL 및 Cable &
Wireless Communications(CWC) -
에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번 조
사는 BSKyB사가 CWC사를 다른 회
사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BSKyB사가 Sky Box Office
유료 영화 서비스 방송을 거부한
유선방송회사들에 대하여 열등한
프로그램 수신방법을 제시함으로
써 이들을 차별할 계획을 갖고 있
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
다.

당해 조사는 BSKyB사에게는 당
혹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왜냐 하
면 이 회사는 ITV사가 ITV, 그리고
디지털 채널인 ITV2의 전송을 Sky
Digital에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공공연히 이의를 제기하여 왔었기
때문이다.

BSkyB사는 이제 시장지배적 지
위를 남용함으로써 로마 조약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동 회사가 ITV의 행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다. 동 회사의 ITV와의 분쟁은 아직 영국 규제당국의 심리를 받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작년에 유럽 전역에서 다수의 디지털 유료 텔레비전 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벌였다. Kirch Group, Bertelsmann 및 Deutsche Telekom간의 기업간 제휴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 성사되지 못하였다.

유선방송회사들은 BskyB사에 대하여 인공위성을 통해 동 회사의 디지털 서비스를 전송하기보다는 직접 전송 - 서부 런던에 소재한 디지털 전송센터로부터의 '클린 피드(clean feed)' 식 전송 - 을 설득하던 중이었다.

유선방송회사들이 BskyB사로부터 클린 피드식 전송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은 내년 초에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개시할 때 케이블 시스템을 통한 방송에 적합하도록 디지털 신호를 재조정하는데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유선방송회사들의 Front Row 유료 서비스 - Sky Box Office의 경쟁 서비스 - 의 방송을 거절한 CWC사가 BskyB사와의 디지털 프로그램 전송계약의 일부로서 클

린 피드식 전송을 획득함으로써 논란은 더욱 커졌다.

BSkyB사는 7월 10일 밤 동 회사가 유선방송회사들과 클린 피드식 전송에 관하여 협상중이며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원칙적으로 유선방송회사들에게 클린 피드식 전송을 하는 데 이의가 없다 고 덧붙였다.

■ '98. 7. 11, Financial Times

일본

공취위, 「1엔 납품」 강요로 로손사에 배제권고

편의점업계의 대기업인 로손사(본사 오사카 부 스이타(吹田)시)가 일용품 납품업체에 사실상 무상으로 상품을 납품하는 「1엔 납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취위는 7월 16일 독점금지법 위반(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동 회사에 대하여 배제 권고를 하였다. 동시에 특별전시 등에 관하여 부당한 협찬금을 요구한 것이 동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경고하였다. 동 회사는 같은 날 공취위에 대하여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전하였다. 공취위는 4월에 동 회사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로손사는 1997년도에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대금 환입액이 예산을 밑돈다는 전망에 따라 환입금의 증수계획을 책정, 1998년 2월경 납품업체 약 60개사에 지불명목이 없는 금액을 환입금 명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시기는 1998년도의 취급상품의 선정시기이기도 하였으므로, 대다수의 납품업체는 거래의 계속을 희망하여 동 요구를 받아들였다. 부당 환입금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약 6,000만엔으로, 동 회사는 총액 약 10억엔에 이르는 부당 환입금 납부의 약속을 받았다.

한편 동 회사는 각 점포에 흩어져 있는 품목의 종류를 통일하여 판매고를 향상시키려고 계획하고, 1998년 1월경 일용품을 납품하는 약 70개사를 모아 상품을 무상납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4월의 현장조사까지 14개사가 총액 약 1억 엔어치의 상품을 「1엔에 납품」하였다.

공취위의 현장조사 후 동 회사는 이러한 요구 및 계약을 취소하였다.

■ '98. 7. 17, 일본경제신문